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10. 28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김정희 의원 등 8명(이진환, 박종길, 권숙자, 손범구, 김장관, 박정환, 서보영)
- 발의일자: 2024. 2. 2.
- 회부일자: 2024. 2. 2.
- 상정 및 의결: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2025. 10. 28.)

2. 제안이유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2023. 8. 16. 개정, 2024. 2. 17. 시행)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(안 제2조)
-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(안 제3조)
-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(안 제4조 ~ 제5조)
-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(안 제6조)
- 청구인명부 및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(안 제7조 ~ 제8조)
-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(안 제10조)
-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등(안 제11조)

- 청구의 수리 및 각하(안 제12조)
-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(안 제13조 ~ 제14조)
-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 사무협조(안 제15조)

4. 관계법령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5조, 제12조, 제14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3. 8. 16.)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, 주민조례청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2조제1항은 주민조례청구의 요건, 참여·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신설하였고,
 - 안 제4조제2항은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정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 서명 요청 방법 및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.
 - 안 제12조는 조례에 위임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·각하 여부 결정기간 및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신설하였고,
 -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는 대표자 변경과 청구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 - 안 제15조는 구청장 협조사무로 대표자의 청구권자 확인 및 홍보 사무를 추가로 규정하였음.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의무와 조례에 위임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결정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,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

- 안 제4조제2항(공동대표자 관련 규정) 삭제
- 안 제12조제2항~3항(의견제출 관련 규정) 삭제
- 안 제14조(청구의 철회) 삭제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수정내용: 붙임 수정안과 같음